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10 선고 2021가단517508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2. 10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7. 12. 30. 체결된 협의분할 약정을 11,804,1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1,804,1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노미정

별지